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

의안 번호	32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관내 농어업(법)인에게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을 출연

2. 관계법령

○「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5조(기금의조성), 제16조(지원 대상사업)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3. 주요내용

○ 2027년 출연금 : 50백만원

○ 사업명 :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(농업발전계정)

○ 사업내역

- 현재까지 남양주시 출연금액 : 2,316백만원(1989~2026)
- 경기도 기금 규모 : 매년 1,150백만원 적립
 · 경기도 200백만원 / 도농복합시(16개) 50백만원 / 일반시(15개) 10백만원
- 지원대상 : 농어업(법)인
- 지원내용 : 연 1% 융자 지원

○ 융자지원 사업 실적 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융자금액(명)	130(2명)	90(2명)	360(2명)	210(2명)

○ 농어업경영자금

- 사업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두고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(원예, 과수, 축산업 등)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
- 지원조건 : 연리 1%, 2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
- 지원한도 : 개인 6천만원, 농업법인 2억원 이내
- 자금용도 : 일반농업, 축산업,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

○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

- 사업대상 :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(원예, 과수, 축산업 등)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,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
- 지원조건 : 연리 1%,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
 (청년 :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)
- 지원한도 : 개인 3억원, 법인 5억원 이내
- 자금사업 : 농지 구입, 시설현대화 등 영농기반 조성 자금